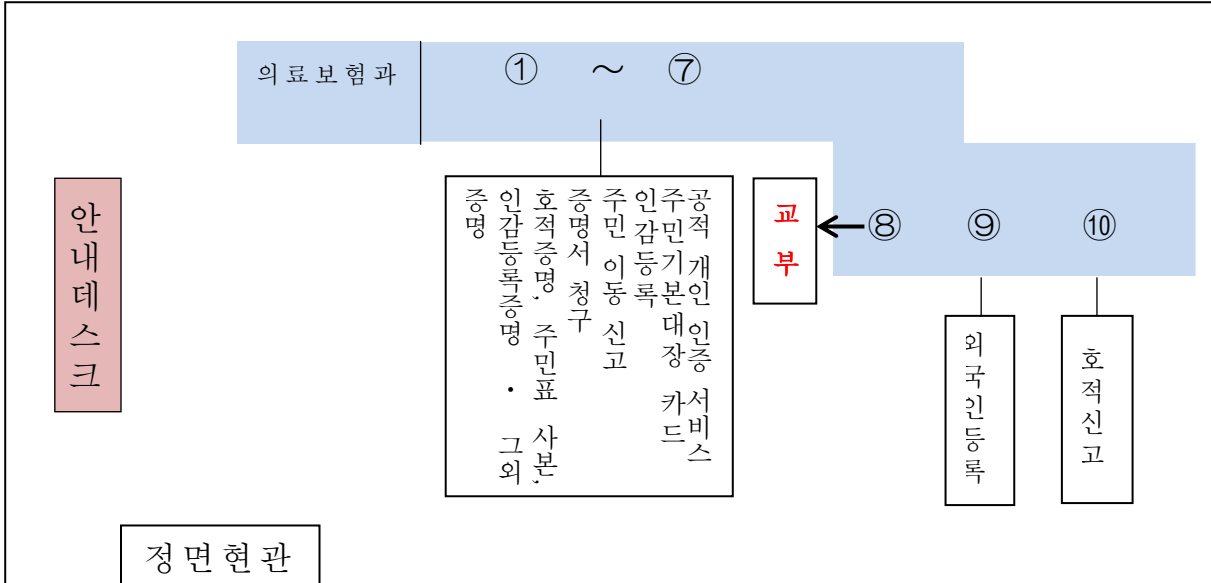


# 제4장 여러 가지 수속

# 신고와 증명

## 절차를 지켜서 정확하게

### ■ 호적주민과 창구 안내(사세보시청 1층)



### ■ 지소·우쿠 행정센터

신고와 증명의 수속은 호적주민과 외에 각 지소·우쿠 행정 센터에서도 가능합니다.(각 지소·우쿠 행정센터 안내는 P096~P105를 참고하여 주십시오)

### ◆ 전입, 전출 신고 등 ◆ ⇒ 호적주민과

사세보시에 전입하거나 타지역으로 전출 할 경우에는 주민 이동 신고가 필요합니다.

신고 종류		신고 기간	신고인	수속시 필요한 준비물
전입신고	사세보시에 전입한 경우	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	본인 혹은 세대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이전 주소지의 전출증명서</li> <li>개호수급자, 전기·후기 고령자 의료부담구분 등의 증명서 (해당자에 한함)</li> <li>연금수첩 (가입자에 한함)</li> <li>주민기본대장 카드 (해당자에 한함)</li> </ul>
전출신고	타지역으로 전출할 경우	이사 예정일 14일 전부터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국민건강보험증(가입자에 한함) · 고령수급자증 (해당자에 한함)</li> <li>후기고령자 의료피보험자증(수급자에 한함) · 개호보험증(해당자에 한함)</li> <li>주민기본대장 카드 (해당자에 한함)</li> </ul>
주거지 변경신고	시내에서 주거지를 변경한 경우	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국민건강보험증(가입자에 한함) · 고령수급자증 (해당자에 한함)</li> <li>후기고령자 의료피보험자증(수급자에 한함) · 개호보험증 (해당자에 한함)</li> <li>주민기본대장카드 (해당자에 한함)</li> </ul>
세대변경	세대주 변경 세대 분리·합병	해당 사실이 발생했을 때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국민건강보험증(가입자에 한함)</li> <li>고령수급자증(해당자에 한함)</li> </ul>

수속 시에 창구에서 본인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. 운전면허증 혹은 건강보험증 등을 지참하여 주십시오.

◆ 호적 신고 등 ◆ ⇒ 호적주민과

혼인 및 출생 등 호적에 관련된 사항은 수속에 필요한 준비물을 확인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신고하도록 합시다. 또한 호적 신고시 허위 신고 방지를 위하여 **운전면허증** 등 신분증명서를 이용하여 본인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(**본인확인이 필요한 신고 : 혼인신고, 협의이혼신고, 양자등록신고, 협의이연신고, 인지신고** 등). 본인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신청 후에 호적 신고가 있었음을 우편으로 통지합니다. 아울러 출생신고, 혼인신고, 사망신고 등의 휴일·야간 신고는 **시청(야간·휴일전용 접수 창구)**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.

종류	신고인	신고기간	신고장소	신고에 필요한 준비물	기타
출생 신고	부모, 동거인, 의사, 조산사, 그 외의 입회자 순	출생 후 14일 이내	신생아 부모 중 한 쪽의 본적지 또는 주소지 태어난 곳의 행정 기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신고서 1통</li> <li>신고인의 인감</li> <li>출생증명서(출생신고서의 오른쪽에 있음)</li> <li>모자건강수첩</li> <li>국민건강보험증(가입자에 한함)</li> </ul>	
혼인 신고	당사자	신고 당일부턴 효력 발생	당사자의 본적지 또는 주소지의 행정 기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신고서 1통</li> <li>당사자의 인감</li> <li>신고하는 행정 기관이 본적지가 아닐 경우 호적등본 혹은 초본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증인 2명 (성년일 것)</li> <li>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 필요</li> </ul>
이혼 신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당사자</li> <li>재판에 의한 이혼일 경우는 재판 신청인</li> <li>확정일로부터 10일이 경과된 경우에는 상대방도 가능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신청 당일부턴 효력 발생</li> <li>재판에 의한 이혼일 경우는 확정일로부터 10일 이내</li> </ul>	당사자의 본적지 또는 주소지의 행정 기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신고서 1통</li> <li>당사자의 인감</li> <li>신고하는 행정 기관이 본적지가 아닐 경우 호적등본 필요</li> <li>재판에 의한 이혼일 경우 조정조서의 등본, 재판 혹은 판결일 경우에 그에 해당하는 등본과 확정증명서(재판신청인의 인감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증인 2명 (성년일 것)</li> <li>재판에 의한 이혼일 경우 증인은 필요하지 않음</li> </ul>
이혼 후에 성을 변경할 경우	이혼 후에 성명 변경을 바꿀고자 하는 당사자	이혼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	본적지 또는 주소지의 행정 기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신고서 1통</li> <li>신청인의 인감</li> <li>신고하는 행정 기관이 본적지가 아닐 경우 호적등본 필요</li> </ul>	
입적 신고	입적자 (입적자가 15세 미만일 경우 법정 대리인)	신고 당일부턴 효력 발생	입적자의 본적지 또는 주소지의 행정 기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신고서 1통</li> <li>신고인의 인감</li> <li>신청하는 행정 기관이 본적지 또는 입적하는 호적지가 아닐 경우에는 각각의 호적등본</li> <li>(가정법원의 허가서)</li> </ul>	
전적 신고	호적의 제일 처음에 기재되어 있는 당사자 및 배우자	신고 당일부턴 효력 발생	전적지, 본적지 및 주소지의 행정 기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신고서 1통</li> <li>신고인의 인감</li> <li>호적등본 1통(동일 시 안에서 전적할 경우에는 불요)</li> </ul>	
사망 신고	친족, 동거인, 집주인, 땅주인, 가족 및 토지의 관리인, 후견인, 보좌·보조인, 임의후견인	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7일 이내	사망한 분의 본적지, 신고인의 주소지 사망한 장소의 행정 기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신고서 1통</li> <li>신고인의 인감</li> <li>사망진단서(사망 신고서 오른쪽에 있음)</li> <li>국민건강보험증(가입자에 한함)</li> <li>연금수첩</li> </ul>	
매장 및 화장 허가 신청	사망신고의 신고인	사망신고 시	사망신고를 제출한 행정 기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신고서 1통(시외에서 화장한 경우 화장장의 명칭과 주소지를 확인할 것)</li> <li>신청인의 인감</li> </ul>	

◆ **인감등록** ◆ ⇒ 호적주민과

▷ 신규 인감등록

등록 자격은 만 15세 이상의 사세보시의 주민기본대장에 기록되어있는 분입니다.(인감등록이 가능한 의사능력이 있을 것)

▷ 사세보 시민 카드(인감등록증)에 비밀번호를 등록하여 자동 교부기에서 증명서 교부가 가능합니다.

신청방법	등록과 발행	필요한 준비물
본인이 인감과 관공서에서 발행한 사진이 붙은 유효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 본인 확인이 가능할 때	바로 등록이 가능하며 인감등록증명서도 땄 수 있습니다	①등록할 인감 ②관공서에서 발행한 사진이 붙은 신분증명서 사진이 붙은 신분증명서란 운전면허증, 여권, 재류카드 및 주민기본대장카드(사진이 붙은 것) 등으로 유효기간이 남은 것을 말합니다.
본인이 인감을 지참하여 보증인의 보증서에 의해 본인 확인이 가능할 때		①등록할 인감 ②보증인의 인감등록증 및 등록인 ※보증인은 현재 사세보시에서 인감등록이 되어 있는 분에 한합니다.
본인이 신청할 때 (관공서에서 발행한 사진이 붙은 유효한 신분증명서가 없을 때)	등록이 될 때까지 다소 시일이 걸립니다	①등록할 인감 본인 확인을 위해 본인 주소로 조회서를 송부합니다. 회답서와 등록할 인감, 건강보험증 등을 지참하여 다시 방문해 주시면 등록할 수 있습니다. (기한은 신청한 다음날 부터 14일 이내)
대리인이 신청할 때 (본인이 질병 등으로 인해 방문할 수 없을 때)	등록이 될 때까지 다소 시일이 걸립니다	①등록할 인감 ②대리인 인감 ③본인 자필 위임장(용지는 시청 혹은 각 지소, 우쿠 행정 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) 본인의 의사 확인을 위해 본인 주소로 문서로 우송 조회합니다. 해당

		문서(회답서)와 인감과 대리인 확인이 가능할 것(운전면허증 등)을 대리인이 지참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. (기한은 신청한 다음날부터 14일 이내)
--	--	--

▷ 등록할 수 있는 인감은 1인 1개입니다.  
 등록할 수 없는 인감도 있으므로, 자세한 사항은 문의하여 주십시오.

▷ 인감 및 인감등록증을 분실하였을 때  
 ⇒ 호적주민과 혹은 각 지소·우쿠 행정센터 창구에 비치된 인감등록폐지신고를 제출하여 주십시오. 다시 인감을 등록하실 때에는 새로 신청하여 주십시오.

◆ 주민기본대장카드 ◆

◎ 주민기본대장카드(주기카드)란

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행정 기관에서 간단하게 교부 받을 수 있는 안전성이 뛰어난 IC카드 입니다. 주기카드는 증명사진이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뉘어져 있으며, 증명사진이 있는 경우에는 공적인 신분증명서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

◎ 교부신청 방법 ⇒ 호적주민과  
 현재, 사세보시 주민기본대장에 기록되어 있는 분은 신청 가능합니다.

▷ 신청 창구  
 호적주민과, 각 지소·우쿠 행정센터  
 ※ 교부는 호적주민과와 우쿠 행정센터에서만 가능합니다.

▷ 필요한 준비물  
 · 인감  
 · 증명사진(사진이 붙은 카드를 희망하시는 분에 한함)  
 ※ 가로 3.5cm, 세로 4.5cm(여권용 증명사진과 같은 사이즈)  
 ※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으로 모자를 쓰지 않고 배경이 없는 얼굴사진  
 · 본인확인서류  
 · 수수료(500엔)

▷ 유효기간  
 10년간

▷ 교부에 관하여  
 당일 교부는 교부를 희망하는 본인이 호적주민과로 직접 신청하여, 신청자 본인임을 확인 가능한 서류(운전면허증, 여권 등 관공서에서 발행한 사진이 있고 유효기

간이 남은 신분증명서)를 지참한 경우에 한합니다.  
그 외의 경우에는 수일 뒤 교부됩니다.

▷그 외

본인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신청이 불가능할 경우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.  
자세한 사항은 호적주민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◆ **공적개인인증 서비스** ◆

◎ **공적개인인증 서비스란**

IC카드(주민기본대장카드 등)을 이용하여 자택 컴퓨터의 인터넷을 통하여 행정 기관 신청 및 수속 등이 가능한 서비스입니다.

※ 서비스를 이용할 때에는 카드리더·라이터가 필요합니다.

◎ **교부신청 방법** ⇒ 호적주민과

현재, 사세보시 주민기본대장에 기록되어 있는 분은 신청 가능합니다.

▷신청 창구

호적주민과

※각 지소·우쿠 행정센터에서는 접수가 불가능합니다.

▷필요한 준비물

- 주민기본대장 카드
- 운전면허증, 여권 등 관공서에서 발행한 사진이 있고 유효기간이 남은 신분 증명서(사진이 있는 주민기본대장 카드도 가능)
- 수수료(500엔)

▷전자증명서의 유효기간

3년간

▷교부에 관하여

당일 교부는 교부를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시청을 방문하여, 신청자 본인임을 확인 가능한 서류(관공서에서 발행한 사진이 있는 면허증 및 여권 등)을 지참한 경우에 한합니다.

그 외의 경우에는 수일 뒤 교부됩니다.

▷그 외

본인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신청이 불가능할 경우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.  
자세한 사항은 호적주민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「전자증명서」는 주소 이동(시내 이사를 포함)및 이름이 바뀐 경우에는 효력이 상실됩니다. 다시 한 번 신청하여 주십시오(유료)

◆ **증명서 교부** ◆

◎ **증명서 교부 수속** ⇒ 호적주민과

주민표 사본, 호적사항 및 개인 사항 증명, 각종 증명서가 필요하신 경우 해당 창구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.

※ 창구에서 신청하실 때는 신청자 본인확인서류(운전면허증, 여권 등)이 필요합니다.

증명서	주의사항	수수료
주민표 사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본인 혹은 동일세대원에 해당되지 않는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필요</li> </ul>	1통 300엔
호적사항 증명 개인사항 증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호적에 기재되어 있는 분, 그 배우자 및 직계가족 (부모, 조부모, 자녀, 손주 등)</li> <li>② 정당한 이해 관계에 해당하는 경우</li> <li>③ 법원 등의 관공서에 제출하는 경우</li> <li>④ 상속관계 증명에 필요한 경우</li> </ul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그 외의 경우에 청구할 때에는 호적에 기재되어 있는 분의 위임장이 필요</li> </ul>	호적사항 증명 개인사항 증명 1통 450엔
호적부표 사본		호적부표 사본 1통 300엔
제적 및 개정 전의 호적등본·초본		1통 750엔
주민표기재사항증명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기재사항증명용지를 지참하여 주십시오. (사세보시 지정 양식도 있습니다)</li> </ul>	1통 300엔
인감등록증명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인감등록증 필요</li> <li>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등록자의 인감등록증, 주소, 성명 필요</li> </ul>	1통 300엔
신분증명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본인의 위임장 필요</li> <li>본적지가 사세보시인 분만 청구 가능합니다.</li> </ul>	1통 300엔

※ 호적사항증명 = 등본, 개인사항증명 = 초본

※ 청구자 본인이 서명할 경우 인감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.

◎ 휴일·야간 박스를 이용하여 주십시오

휴일이나 야간에도 주민표 사본 등의 교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시청 및 각 지소(요시이, 세치바루, 고사자, 에무카에, 시카마치 제외), 시마노세초 경찰관 연락소 옆 등 13개 장소에 공중전화박스 모양의 접수 박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.

○ 신청방법

비치되어 있는 신청서와 함께 교부수수료, 우표를 붙인 반환용 봉투 및 본인 확인서류(면허증, 보험증 등의 사본)을 전용봉투에 넣어 투입하여 주십시오. 신청서 및 반환용 봉투, 전용 봉투는 박스안에 상비되어 있습니다. 우표는 신청자 본인이 준비하여 주십시오.

○ 신청 가능한 경우

- ① 주민표 사본 ⇒ 본인 또는 동일 세대원
- ② 호적사항증명·개인사항증명  
⇒ 사세보시에 호적을 둔 본인 혹은 동일 호적에 기재되어 있는 분



◎ 호적, 주민표 사본은 우편청구도 가능합니다.

호적의 등본 및 초본, 주민표 사본 등은 우편 청구가 가능합니다. 청구서, 수수료 (소액우편환), 본인확인서류(면허증, 보험증 등의 복사본), 반환용 봉투를 동봉하여 호적주민과로 발송하여 주십시오.

◎ 시청 업무 시간 외에도 인감 증명, 주민표 사본 수취가 가능합니다.

시청 업무 시간 내에 교부 대상자 본인이 전화로 예약하여 주십시오.

전화예약으로 교부 가능한 증명서	전화예약 및 교부 대상자	수취시 필요한 준비물
① 인감등록증명서	등록자 본인에 한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본인확인서류 (전화 예약 시 약속한 본인확인서류)</li> <li>• 인감등록증</li> <li>• 수수료</li> </ul>
② 주민표 사본	본인 또는 동일세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본인확인서류 (전화 예약 시 약속한 본인확인서류)</li> <li>• 수수료</li> </ul>
③ 조세 또는 공적 과세에 관한 증명서, 토지 또는 건축물 등 자산에 관한 증명서 및 공적 장부의 등본	본인에 한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본인확인서류 (전화 예약 시 약속한 본인확인서류)</li> <li>• 수수료</li> </ul>

- 전화예약 접수시간 : 평일 8:30~16:30
  - 전화예약 접수 장소 : ①, ②의 경우 ⇒ 호적주민과  
③의 경우 ⇒ 시민세과 증명창구  
Tel 0956-24-1111(대표전화)
  - 교부장소 : 사세보시청 야간·휴일 전용 접수창구
  - 교부시간 : 평일 17:30~20:00  
토, 일, 공휴일 9:00~17:00
- ※ 단, 12월 29일 ~ 1월 3일(연말연시)에는 교부하지 않습니다.



# 세금

시에서 징수하는 세금에 대하여 알기 위해

## ◆ 세금의 종류 ◆

- ◎ 시에서 징수하는 세금에 관해서는 ⇒ 시민세과  
⇒ 자산세과  
⇒ 납세과  
⇒ 보험료과

### ◎ 세금의 종류

시에서 징수하는 세금은 호적 및 주민등록, 사회복지, 쓰레기 및 분뇨처리, 질병 및 공해 예방, 학교 교육, 도로 및 공원 정비 등 보다 원활한 시민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. 사세보시에서 과세하는 시세는 다음과 같습니다.

### ○시세의 종류

	시 민 세	개인시민세	개인의 전년도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(균등(균등할과 소득할)
		법인시민세	법인규모 및 법인세를 기초로 부과하는 세금(균등할과 법인세할)
보 통 세	고 정 자 산 세	토지, 가옥 및 상각자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	
	경 자 동 차 세	원동기장치 자전거, 이륜 소형 자동차, 경자동차, 소형특수자동차 등에 부과하는 세금	
	시 담 배 세	담배 제조업자, 특정 판매업자, 도매 판매업자가 시내의 소매점에 판매한 담배에 부과하는 세금	
	특 별 토 지 보 유 세	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보유하거나 취득하였을 때 부과되는 세금 (2008년도부터 신규과세정지)	
목 적 세	도 시 계 획 세	시가지화구역내의 토지, 가옥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	
	입 욕 세	광천욕장 입욕 시에 부과되는 세금	
	국 민 건 강 보 험 세	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세금	

**보통세** : 세수입의 용도에는 제한이 없으며 사세보시의 일반적인 경비로서 사용할 수 있는 세금.

**목적세** : 세수입의 용도가 특정한 목적에 필요한 경비로서 정해져 있는 세금으로, 일반 경비로서는 사용할 수 없는 세금. 즉,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사업 추진, 국민건강보험세는 국민건강보험사업, 입욕세는 관광시설 및 소방 시설 정비 등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됨.

### ○기타 세금

국세 — ①소득세 ②법인세 ③소비세 ④상속세 ⑤증여세 등  
국세에 관한 상담 ⇒ 사세보세무서 Tel 22-2161

현세 — ①현민세 ②사업세 ③부동산소득세 ④자동차세 등  
 현세에 관한 상담 ⇒ 현북진흥국 세무부 Tel 23-1386

**◆ 시세에 관한 증명과 등본 교부 및 열람 ◆** ⇒ 시민세과  
 시세에 관한 증명, 등본 교부, 열람은 시청, 각 지소, 우쿠 행정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주택용 가옥증명서·현황도는 시청에서만, 자도(字圖:토지대장 등에 쓰이는 지면, 면적 등을 표시하는 지도)는 시민세과 및 우쿠 행정센터에서만(우쿠 행정센터는 관내 자도만)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 신청하실 때에는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운전면허증, 주기 카드, 건강보험증 등)이 필요합니다.

◎ 증명 교부 및 열람 청구가 가능한 분

①본인(공유자 포함) ②본인 이외(위임장·상속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)

◎ 증명 종류, 수수료

- 소득과세증명, 납세증명 \_\_\_\_\_ 1통 300엔
  - 체납한 사실이 없음을 증명 \_\_\_\_\_ 1통 300엔
  - 무자산증명 \_\_\_\_\_ 1통 300엔
  - 자산증명, 평가증명, 공과증명 \_\_\_\_\_ 1필, 1동 300엔  
 ※ 단, 토지는 1필, 건물은 1동이 추가될 때마다 100엔 추가
  - 자도(字圖) 등본, 열람 \_\_\_\_\_ 1장(열람은 1권) 300엔
  - 공부(公簿) 등본, 열람 \_\_\_\_\_ 1장 300엔
  - 조세특별조치법에 해당되는 주택용 가옥 증명 - 1건 1,300엔
- ☎ 문의처 : 시민세과 증명 창구

**◆ 시세의 감면과 유예 ◆**

- ◎ 시세 부담이 감면되는 경우 ⇒ 시민세과  
 ⇒ 자산세과  
 ⇒ 보험세과

재해 등에 의하여 생활이 곤란한 경우 및 생활 보호 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시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.

- ◎ 납세가 유예되는 경우 ⇒ 납세과  
 ⇒ 보험세과

재해 등에 의하여 시세를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납세를 유예하거나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.

- ◎ 중복 납세한 경우 ⇒ 납세과  
 ⇒ 보험료과

시세의 경우 과세액보다 많게 혹은 이중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환급하여 드립니다. 환급 통지서와 수취 방법을 기재한 문서를 보내드리게 되므로 확인하신 후 수취하여 주십시오.

- ◎ 납세를 잊어버리지 않아 편리한 자동이체제도 ⇒ 납세과, 보험료과  
 예금 계좌를 지정하시면 해당 금융 기관에서 자동적으로 이체하여 납부됩니다.  
 필요한 수속은 시내의 금융 기관, 우체국, 시청의 납세과와 보험료과, 각 지소, 우쿠 행정센터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.
- 신청 방법 : 납부 용지, 예금 통장, 해당 통장의 인감을 지참한 후 계좌를  
 보유하신 은행 등에서 신청하여 주십시오.
- 자동이체 가능한 세목 : 시현민세(개인의 보통징수분), 고정자산세, 경자동차세,  
 국민건강보험세

◎ 연간 납부 일정(시세)

세금 종류	시민세, 현민세(보통징수)	고정자산세, 도시계획세	경자동차세	국민건강보험세 (보통징수)
납부월	6월, 8월, 10월, 1월	4월, 7월, 9월, 12월	5월	6월~3월 사이 매달